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사업명		화성시 사이버보안관제 용역	발주부서	정보통신과
추진 단계명	확정 심의	[√] 발주 전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26-06-21
	변경 심의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화성시 사이버보안관제 용역 과업 확정심의		
심 의 일 자		2026년 9월 4일	심 의 장 소	비대면 서면심의
심 의 결 과		[√] 승인 [] 불가 [] 조건부 승인		

위 원	심 의 의 견	심 의 결 과
김형준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 초동대응, 이벤트로그 분석 및 사이버 공격 탐지 등을 수행하는 본 사업은 사이버보안관제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예산 또한 SW기술자 임금단가를 이용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였다고 판단됨.	승인
정혜정	본 사업은 사이버 침해탐지 및 침해사고 발생시 초동대응, 취약점 분석 업무 등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됨. 사업예산 또한 SW기술자 임금표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산출하였음. 1년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사이버보안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승인
조영임	화성시에서 운영중인 보안관제시스템과 정보보안장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안관제 용역 사업으로, 필수사업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사업예산 역시 적절하게 산출하였음.	승인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2026년 9월 4일

화성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 정 희 석 (서명 정희석인)

화성시장 귀하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사업명		화성시 사이버보안관제 용역	발주부서	정보통신과
추진 단계명	확정 심의	[✓] 발주 전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26-06-21
	변경 심의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화성시 사이버보안관제 용역 과업 확정심의		
간소화 심의대상		[] 총 사업금액 1억이하 []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 기타		
심 의 일 자		2026 년 9월 4일	심 의 장 소	비대면 서면심의
심 의 결 과		[✓] 승인 [] 불가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 초동대응, 이벤트로그 분석 및 사이버 공격 탐지 등을 수행하는 본 사업은 사이버보안관제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예산 또한 SW기술자 임금단가를 이용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였다고 판단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2026년 9월 4일

위 원 김 형 준 (서명)

화성시장 귀하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사업명		화성시 사이버보안관제 용역	발주부서	정보통신과
추진 단계명	확정 심의	[✓] 발주 전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26-06-21
	변경 심의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화성시 사이버보안관제 용역 과업 확정심의		
간소화 심의대상		[] 총 사업금액 1억이하 []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 기타		
심 의 일 자		2026 년 9월 4일	심 의 장 소	비대면 서면심의
심 의 결 과		[✓] 승인 [] 불가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본 사업은 사이버 침해탐지 및 침해사고 발생시 초동대응, 취약점 분석 업무 등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됨.
사업예산 또한 SW기술자 임금표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산출하였음.

- 1년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사이버보안문제 해결을 하루 있을 것으로 판단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2026년 9월 4일

위 원 정 혜 정 (서명)

화성시장 귀하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사업명		화성시 사이버보안관제 용역	발주부서	정보통신과
추진 단계명	확정 심의	[✓] 발주 전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26-06-21
	변경 심의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화성시 사이버보안관제 용역 과업 확정심의		
간소화 심의대상		[] 총 사업금액 1억이하 []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 기타		
심 의 일 자		2026 년 9월 4일	심 의 장 소	비대면 서면심의
심 의 결 과		[✓] 승인 [] 불가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화성시에서 운영중인 보안관제시스템과 정보보안장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안관제 용역 사업으로, 필수사업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사업예산 역시 적절하게 산출하였음.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2026년 9월 4일

위 원 조 영 임

화성시장 귀하